

라틴아메리카의 언어, 문화, 인권: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원주민 언어권(權)을 중심으로*

김우성(부산외대 스페인어과)**

- I. 들어가면서
- II. 언어권(權)의 개념
- III.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언어권(權)
- IV. 나가면서

I. 들어가면서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된 주목할만한 일 중의 하나는 많은 나라에서 각 국가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19세기 국민국가 건설의 기반이 되었던 단일문화, 단일언어라는 단일문화주의를 지양하고 다양한 민족 집단과 문화의 차이와 가치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이 지역에는 정복자들의 문화인 유럽문화와 다양한 원주민들의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적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나 식민 초기를 제외하고는¹⁾ 식민기간 내내 원주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Uh-Sung K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t. of Spanish, uskim@pufs.ac.kr), "Lengua, cultura y derechos humanos: derechos lingüísticos de los pueblos indígenas en México y Guatemala".

1) 식민 초기 원주민들을 가톨릭으로 개종하기 위해 성직자들은 이들을 교육하는 데 정복자의 언어인 스페인어가 아닌 원주민어를 사용하였다(Nahmad 1998).

민 문화에 대한 학살과 원주민의 동화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독립 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되는데, 당시 원주민이 많았던 국가에서 유럽식 모델을 본뜬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국민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지배문화와 다른 모든 문화는 국민통합 및 국가발전의 방해물로 여겨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사법,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스페인어를 채택하여 원주민어는 사실상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스페인어만을 사용하여 교육을 하게 된 교육기관은 원주민을 동화시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첨병기지인 동시에 원주민 문화학살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19세기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됨으로써 당시 수적 우위를 보인 나라에서도 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이들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주장하고, 민족의 자결권과 평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원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 후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원주민 동화정책에 저항해왔던 수많은 투쟁과 원주민 공동체의 민족적,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원주민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권리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주민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협약을 통한 원주민의 언어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유엔의 원주민 권리선언, 국제노동기구의 원주민에 관한 협약 169, 그리고 1996년에 채택된 유네스코의 세계 언어권리선언 등이다.

1980-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동안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원주민이 많은 나라의 정치·사회적 주체로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4년에 일어났던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의 봉기와 1996년에 있었던, 35년 내란에 종지부를 찍은 과테말라 정부와 반군인 과테말라 혁명국민연합(Unidad Nacional Revolucionaria Guatemalteca)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다.

이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의 진전,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이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원주민 인권과 언어·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방 경제정책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가 시급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서는 세계화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까지 견지해온 단일민족, 단일문화, 단일언어라는 19세기 자유주의에 입각한 근대 국민국가의 가치를 지양하고, 다양성을 국가의 통일성을 해치는 갈등의 근원으로 보지 않고, 다양성이란 개념에 기초하여 국민통합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인정은 원주민 수가 많은 멕시코, 과테말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에서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칠레나 아르헨티나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는 그 동안 무시해왔던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성격을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규정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언어가 이들에게 소통수단의 차원을 넘어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원주민의 언어권(權)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자신의 모국어를 말할 권리는 원주민 단체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헌법에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제외하고는 헌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언어권(權)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럽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미국 및 캐나다 소수민족의 언어권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들이 언어로 인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권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언어권(權)은 어떻게 규정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우선, 원주민의 언어권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언어 상황과 원주민어의 위상을 살펴본 다음 민주화 이후 문화적 다원주의가 인정되면서 각국의 언어 정책에 나타난 변화를 알아본 후,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언어권(權)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 두 국가의 언어권(權)의 내용 및 그 보장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언어권(權)의 개념

전 세계의 언어 상황을 보면 한 국가 내에서 하나의 언어가 사용 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에 속하고 보통 한 국가 내에서 두 개 내지 그 이상의 언어가 공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현상을 다언어주의(multilingüismo), 이런 나라를 다언어국가라 부른다. 이런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언어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주류집단의 언어가 공용어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소수와 언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맞는다. 즉, 그 사회의 소수 집단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언어에 대한, 혹은 언어에 의한 불평등이 생겨난다. 첸(Chen 1998, 48)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면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본국의 언어로 된 사법체계가 운영되면 이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식민지 국민들은 형사 재판인 경우 법원에서 적절한 통역이나 번역이 제공될 때 까지는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자신의 변호사는 자기를 어떻게 변호하는지, 왜 자신이 유죄인지 아니면 무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 (2) 식민지 국가의 행정이 모두 본국의 언어가 공식 언어가 되어 이루어질 때 이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업무나 소통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식민지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식민

지 본국의 언어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 (3) 다민족, 다언어로 구성된 사회에서 정부가 단일문화, 단일언어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동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교육이나 사회정책으로 인해 소수자의 언어가 소멸될 위기에 몰린다. 조금 덜 한 경우에는 이중 언어교육이 시행되나 이것 또한 소수자의 언어가 언어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언어문화적 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언어로 인해 차별을 당한 경우인데 이렇게 언어에 의해 차별이나 불평등을 당한 상태를 사회 언어학에서는 ‘언어차별(languicism)’이라 부르고 언어권(權)이 침해당했다고 말한다.(Skutnabb-Kangas and Phillipson 1995). 언어차별은 영어의 철자가 나타내듯이 성차별(sexism), 인종차별(racism)과 같은 맥락에서 언어에 의한 차별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김성재 외(2002, 19)는 인권의 기본적 개념을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자연법적 원칙에 따라 일체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 정의하고 “인권은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뿐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언어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성에 정당한 존중과 관심을 보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언어권(權)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스커드납-강가스와 필립슨은 언어권(權)을 하나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개인의 언어권(權)과 집단의 언어권(權)을 정의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어권(權)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수언어를 사용하든 소수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자신의 모국어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국어를 배우고 모국어를 통해 최소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와 공식적인 맥락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가 사는 국가의 공용어 중 최소한 하나를 배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포함하며, 따라서 교사들이 이중 언어구사자이어야 한다.

집단적 차원에서 언어권(權)을 보장한다는 것은 소수그룹이 존재할 권리(다시 말하면, 차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언어를 향유하고 발전시킬 권리와 자신의 언어로 교과과정을 관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나 다른 교육 및 훈련기관을 설립·유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국가의 정치적 사안에 대표자를 보내 참여할 권리와 적어도 문화, 교육, 종교, 정보, 사회문제에 있어서 집단적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한 재정적인 수단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Skutnabb-Kangas and Phillipson 1995, 2).

이들은 이러한 권리가 제한을 받으면 기본적인 언어권(權)이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많은 상황을 포괄하려다 보니 너무 일반적이 되어 각 항목마다 보다 구체적인 언어 법률로써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적 권리에서 소수자의 자치권을 언급한 것은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19세기에 출현한, 중앙 집권적인 국민국가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소수 민족에게 자치를 허용한 정치구조의 경험이 거의 전무할 뿐 아니라 아직 자치형태에 대해 정부와 원주민 간에 큰 의견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멜(Hamel 1997, 7)은 '자치(autonomy)'가 다원주의적 국민국가 내에서 분리와 격리를 피하는 자결권의 현대적이고 특수한 형태라고 말한다.

언어권(權)이 개인적 권리냐 아니면 집단적 권리냐 하는 것에 대해 첸(1998, 49)은 어떤 언어권(權)은 -예를 들어 피의자가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혐의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개인적 권리에 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한 언어 공동체가 자신들의 언어의 생존을 담보하고, 이를 후세에게 전승할 권리- 집단적 권리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말한다. 언어권(權)의 성격

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어권(權)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언어적 다수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소수자의 권리를 말한다는 것이다.²⁾ 즉, 언어적 다수자는 자신들이 지배와 권력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언어권(權)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적 소수자들은 그들을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전체로 파악해야만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언어적 소수자의 집단적 권리의 인정은 다민족, 다원적 사회개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언어적 소수자를 한 국가 내의 자치집단 또는 민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은 아직도 세계의 많은 국가를 지배하는 단일언어, 단일문화 국가의 이념과 배치된다(Paulston 1997; Skutnabb -Kangas and Phillipson 1995).

언어권(權)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소수자가 언어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수자 언어의 사용을 보호하고 진흥시키는 것이다. 최근의 언어권(權) 관련 법률은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첸은 언어권(權)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면서 언어권(權)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언어권(權)이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의 사용을 영속화하고, 그것이 미래에도 생존하는 것을 담보하며, 자신의 언어로 정보나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다른 법적 권리가 언어적인 이유로 침해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부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거나 정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Chen 1989, 49).

2) 그러나 한 사회의 언어적 다수자가 언어권(權)을 주장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영어전용화운동(English only)으로 히스패닉의 증가와 함께 스페인어 사용인구가 증가하자 영어를 미국의 공용어로 법제화 하자는 운동이다. 이는 소수자 언어인 스페인어 확장에 위협을 느낀 언어적 다수자인 영어 사용자가 자신들의 언어적 권리를 주장한 것을 의미한다.

언어권(權)을 보장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두 가지 원칙이 논의되어 왔다. 하나는 속지주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속인주의 원칙이다. 속지주의 원칙이란 한 언어공동체가 자신들의 모국어를 그 공동체 내의 어디든지 공적 영역에서 사용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속인주의 원칙이란 개인이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은 어디서든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Mar-Molinero 2000, 70). 속지주의 원칙은 다수파 언어사용자로부터 지배와 잠식에 직면해 있는 소수파 언어사용자들에게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 있는 반면, 한 영토에 국한된 언어적 권리의 강조는 그 지역을 소외시켜 단일 언어 사용지역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 경우 종종 한 국가의 언어적 다수파가 특정 지역에서는 언어적 소수파가 되어 차별과 불평등을 받는 경우가 생겨난다.³⁾

III.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언어권(權)

III.1. 라틴아메리카의 언어 상황

현재 라틴아메리카에는 스페인어가 대부분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독립이후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스페인어 교육의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라틴아메리카에는 전체적으로 400개 이상의 원주민어를 사용하는 5000만의 인구가 존재한다.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 과테말라,

3) 스페인의 까탈루냐 지방이 대표적인 곳이다. 이 지역의 언어인 까탈루냐어(catalán)는 프랑코 정권의 말살정책으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가정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프랑코 사후 제정된 1978년 헌법에서 까탈루냐 지방의 공용어로 인정되면서, 이 지역의 민족주의와 함께 활성화되어 현재는 이 지역의 모든 영역에서 다수파 언어가 되었다. 그 결과 스페인의 다수파 언어인 스페인어 사용자가 이 지역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지에서는 원주민의 비율이 높고,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는 그 비율이 아주 낮다.

<표 1>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원주민 비율

국 가	원주민 비율
아르헨티나	1.5%
볼리비아	59.2%
브라질	0.2%
칠레	5.7%
콜롬비아	2.2%
코스타리카	0.8%
에콰도르	33.9%
엘살바도르	2.3%
과테말라	59.7%
온두라스	3.2%
멕시코	7.5%
니카라과	8%
파나마	6.8%
파라과이	2.3%
페루	36.8%
베네수엘라	1.5%

출처: Zimmerman 1995; Gleich 1988; Adelaar 1991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다언어적 상황, 언어적 변이, 언어간 접촉이 상존한다. 과테말라에는 스페인어와 21개의 원주민어, 2개의 혼성어가 공존하고, 콜롬비아에서는 64개의 원주민어 2개의 혼성어, 멕시코 60개 원주민어, 볼리비아 30개 원주민어, 브라질 170개, 파라과이 6개 언어가 존재한다. 페루에는 스페인어 외에 많은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케추아어(quechua)와 아이마라어(aimara)가 있고, 16개 언어군에 속하는 40개의 언어가 쓰이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인근 국가와 접경을 이루는 곳에서 사용되어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어 중 일부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는 마야어(maya), 나우아틀어(náhuatl), 끼체어(k'iche), 께추아어, 아이마라어, 과라니어(guaraní), 마뿌체어(mapuche) 등이 있으며, 께추아어 같은 언어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걸쳐 약 1100만의 인구가 사용한다. 또한 과라과이에서 스페인어와 함께 공용어로 상용되는 과라니어는 450만 명이 사용하고, 아이마라어 사용자는 250만 명이다. 그 반면에 단지 그 사용자 수가 몇 백 명에 불과한 언어도 있다.

이주나 다른 사회적 변동의 결과로 라틴아메리카의 대도시에는 원주민들이 크게 증가했다. 칠레의 산티아고에는 50만 명의 마뿌체 원주민이 살고, 페루의 리마에는 60만명의 께추아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볼리비아 출신 께추아어 사용자들이 살고, 에콰도르의 과야킬에 30만 명의 원주민이 거주한다.

이들 원주민에게는 스페인어가 제 2언어로 이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는 모어인 원주민어의 간접현상으로 음운, 형태·통사적인 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더 이상 원주민어가 사용되지 않는 지역의 스페인어에서도 원주민어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스페인어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정체성, 갈등, 동맹 혹은 배타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Godenzzi 1991).

Ⅲ.2. 독립 이후 언어정책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신생 독립국들은 언어적, 민족적 차이를 낙후, 소외 그리고 국민 사회 내의 소통의 방해물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원주민 공동체를 개발하려는 계획은 사회·경제적 통합, 문화적 동화, 언어말살이라는 전략 위에 기반을 두었고, 그 목표는 원주민들의 탈원주민화였다.(Hamel 1995, 289) 당시 존재했던 언어·문화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동질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생각은 당시 제정된 헌법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지역 많은 국가의 헌

법에는 원주민의 존재를 아예 인정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모호한 구절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⁴⁾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이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며, 소외된 소수민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또한 이들 국가의 헌법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 적용하여 사실상 법 앞에 모든 차이는 폐지되었다. 평등은 곧 언어·문화적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주민들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거부되었다. 그 결과 교육을 포함한 공적인 영역에서 스페인어의 지배적인 지위가 확립되었고, 원주민어는 가정이나 비공식적인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여, 근대적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채 절대 빈곤의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오명을 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정복 이후 계속된 언어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해왔다. 이는 그 동안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시행한 언어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개방화, 원주민의 정치·사회적 입지 강화, 국제사회의 원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유지해왔던 단일문화, 단일언어 정책에서 다 문화, 다 언어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하멜(2001, 147)의 표현을 빌리면 원주민의 존재를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이를 국가의 사회·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라 볼 수 있다. 이런 인식 하에서는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것이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 다양성이 지역 국가의 민주 발전을 풍요롭게 할 요소라는 다원주의적 시각은 1992년에 있었던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

4) 현재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헌법에도 원주민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속유산 정도로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재 주류사회가 바라보는 원주민들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준다.

의 공동 선언문에도 들어 있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제 권리를 보장하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특히 문화권과 함께 원주민 언어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주민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독립 이후 언어정책의 큰 변화를 보인다.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중 최소한 11개 국가(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의 헌법에서 문화적 다원성과 함께 원주민의 언어권(權)을 인정·수용하고 있고, 칠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에서는 법률로서 원주민의 차별화된 교육, 즉 간문화적 이중 언어교육을 인정한다.

콜롬비아 헌법 10조는 “스페인어는 콜롬비아의 공용어이다. 원주민의 언어와 방언도 그 사용 지역에서 공용어이다. 고유의 언어적 전통을 가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이중 언어교육이어야 한다”라고 원주민어의 특정지역에서의 집단적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니카라과 역시 1993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대서양 연안 원주민들의 집단적 언어권(權)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페루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의 개인적 언어권(權)을 보장함과 동시에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이들의 집단적 언어권(權)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1993년에 공포된 헌법을 보면 “모든 사람은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의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국가 내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모든 페루인은 자신의 언어를 통역을 통해 어떠한 기관에서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헌법 2조 19항)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48조에는 “스페인어가 국가의 공용어이고 역시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그리고 나머지 원주민어도 사용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법에 의해 공용어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12개국⁵⁾이 비준한, 1989년에 나온 원주민에 관

5) 현재까지(2005년 9월) 이 협약을 비준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베네

한 국제노동기구협약 169는 지금까지 나온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 문화, 언어의 권리를 인정한 유일한 국제 협정인데, 28조에서 원주민 아동이 자신의 모국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울 권리와, 원주민이 자신의 언어와 거주하는 지역의 공용어를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원주민어를 보존하고 그 사용을 발전, 증진시킬 법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과 국제노동기구협약 169에서 규정한 언어권(權)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언어 관련법의 제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2003년에 원주민 언어권(權)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언어 정책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앞서 가는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이 두 나라에서의 언어권(權)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III.3. 멕시코에서의 언어권(權)

멕시코의 1917년 헌법을 보면 “멕시코는 단일언어, 단일문화를 가진 멕시코인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는 4조에서 “멕시코는 원주민에 기반을 둔 다문화적 구성을 갖는 국가이다. 법률로써 그들의 언어, 문화, 풍속, 관습, 자원, 특정한 형태의 사회 조직을 보호하고 진흥시킨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국가의 관할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일문화, 단일언어 국가에서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문화, 다언어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 이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장치를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 일환으로 같은 해인 1992년에 연방 및 멕시코시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스페인어를 잘 하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 형사소송에서 통역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원주민의 언어권(權)에 관한 일반법”(이하 원주민 언어권(權)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 법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수엘라, 온두라스 등 12국이다.

모든 멕시코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구어든, 문어든 제한 없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 및 서비스에서 원주민어의 사용을 스페인어의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주민어에 스페인어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다(7조).

원주민의 언어적 권리를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도 보장하고 있다(2조). 많은 학자들(Hamel 1995)이 주장한 것처럼 원주민이 언어적 권리를 명실상부하게 향유하려면 집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 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국가기관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던 언어에 관한 법률을 한 곳으로 모으고, 원주민의 언어권(權) 보장을 위해 각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인 “국립 원주민어 연구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4장)⁶⁾. 이는 지금까지 원주민의 언어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원주민 언어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언어권(權) 법의 제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어권(權) 보장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연방정부에서 원주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각 기관이 언어권(權)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회, 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공동책임을 명시하여 원주민어의 활성화를 위해 언어의 사용과 교육에 있어서 가족, 마을, 공동체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원주민 정책이 당사자인 원주민들이 배제된 채 수립·시행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원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6) 이 법에 따라 교육부 산하에 “국립 원주민어 연구원”이 2004년에 설립되었으나 필자가 이 기관을 방문한 2005년 4월 현재 준비단계에 있었고 예산의 미확보, 직원간의 업무분담의 모호성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관은 부처간의 조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언어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 못했다는 점과, 원주민어의 언어권(權) 보장은 그들 스스로 기존의 원주민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고, 이를 가정과 공동체에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언어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III.3.1. 언어권(權)의 내용

(1) 차별의 금지

소수 언어 사용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언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 언어권(權)법 8조에서도 “어떠한 사람도 언어로 인한 혹은 언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법에서의 언어권(權)

소수언어 사용자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률 집행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에서는 언어권(權)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연방형사소송법 28조에서 스페인어를 잘 하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 재판에서 통역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에 공포된 원주민 언어권(權) 법에서는 적용 분야를 형사, 민사를 포함한 모든 재판뿐만 아니라 농업 및 노동 분쟁에까지 확대하고, 재판 시 원주민의 관습과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에서 원주민이 그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통역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법원에서 제공한 통역사들이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는 잘 하나, 법률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아, 원주민들에게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3) 행정기관에서의 언어권(權)

원주민 언어권(權)법 7조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공적 업무나 행정절차, 그리고 공공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하는 데 원주민어와 스페인어의 효력을 동등하다고 규정하고, 행정기관에서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멕시코시와 원주민어가 사용되는 지역의 각 주에서는 해당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해서, 원주민어로 제기된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결정하여 원주민 사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들이 법률, 규정,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와 관련된 공공사업 및 공공서비스 내용을 원주민어로 제공하고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4) 대중매체에서의 언어권(權)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언어의 사용유형과 언어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원주민어가 그 사용이 확대되고 발전·유지되기 위해서는 대중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원주민 언어권(權)법 6조에서도 대중매체가 멕시코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비율의 시간을 설정하여 각 지역의 대중매체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원주민어로 제작된 프로그램과, 멕시코 여러 지역의 문학, 문화적 전통 그리고 다양한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교육에서의 언어권(權)

지금까지 언어권(權)이 가장 잘 보장된 분야가 교육에서였다. 원주민 언어권(權)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교육 일반법에 원주민의 이중 언어교육의 규정을 두어 원주민의 언어권(權)을 보장했다. 교육에서의 언어권(權)의 보장은 원주민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원주민어에 대한 교육은 물론 교육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원주민어이어야 한다.

언어권(權)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언어가 계속 사용, 보존되어야 하고, 교육에서 사용됨으로써 언어의 표준화와 어휘의 현대화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교육에서의 언어권(權)이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스킨드납-캥가스(2002)도 교육에서의 언어권(權)이 모든 언어권(權)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이중 언어교육이 그랬듯이, 멕시코의 경우도 처음에는 원주민어를 보존하기 위해 언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를 빨리 습득하는 한 방편으로 원주민어를 가르치는 과도기적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서는 우선, 원주민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어를 사용하여 스페인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는커녕 오히려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었다. 따라서 원주민 학습자의 인간적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교육이었다. 이에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원주민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간문화적 이중 언어교육(Educación Intercultural Bilingüe)’이다. 이 방법은 원주민어가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원주민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로 일반 과목(역사, 수학, 자연... 등)을 가르치며, 스페인어는 제 2외국어로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 교육의 원래 취지는 원주민이 사는 나라의 주류문화와 스페인어 그리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배워,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주류 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스페인어와 주류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교육의 형태이다.

원주민 언어권(權)법(11조)에서도 연방 교육부와 각 주의 교육부에게 원주민들이 의무교육에서 간문화적 이중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육체계에서 언어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존엄성과 정체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중등 및 고등 교육에서 간문화성, 다언어주의, 다양성과

언어권(權)이 존중되는 것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언어 진흥

원주민어와 같은 소수 언어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원주민어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이다(Dunbar 2001). 이와 관련하여 원주민 언어권(權)법 5조에서도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원주민어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보존, 발전, 사용을 장려할 의무를 연방정부, 주정부, 각 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III.3.2. 언어권(權) 보장실태

위에서 본 것처럼 원주민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의 공포로 멕시코에는 이제 원주민의 언어권(權)이 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언어권(權)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문화된 법에 불과하다. 멕시코의 언어권(權)법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분화된 원주민어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언어 계획 실행의 어려움이다. 현재 멕시코에는 6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언어 내에서도 방언의 차이가 너무 심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서로 언어가 다른 경우 국가의 공용어인 스페인어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원주민어 내에서도 많은 방언이 존재하지만⁷⁾ 원주민 간의 종족 이기주의로 인해 표준어의 제정이 어려워, 행정기관에서 원주민어로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언어를 표준어로 사용해야 할지가 큰 문제로 대두된다. 또한 통일된 문자가 부재하고 어휘의 현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교육, 사법, 행정 영역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다. 따라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원주민어 서비스가 거의 불

7) 이는 많은 원주민어가 문자를 갖지 못하여 구어로만 사용된 결과이다.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이상적인 법과 복잡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 우선 언어적 차이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원주민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마야어를 사용하는 유카탄 지역에서는 각 방언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가능하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는 연방 및 주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이다. 1992년 헌법에 원주민의 문화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첨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주에서 이에 맞게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⁸⁾. 또한 언어권(權)법이 시행하려면 연방 및 주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주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 이 경우 유일한 해결책은 시민사회가 성숙하여, 원주민들의 언어 및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 것이 원주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원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원주민 문제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다.

그럼 각 영역에서 원주민의 언어권(權)이 보장되는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행정에서의 원주민 언어권(權)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원주민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원주민발전위원회(Comisión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los Pueblos Indígenas)에서조차도 원주민어로 된 행정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원주민어가 너무 많아 어떤 언어부터 서비스를 해야 할지가 문제이고, 또한 원주민어를 하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예산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 그래도 거의 모든 원주민이 마야어를 사용하고, 이중 언어 구사자가 많아 인력확보가 가능한 유카탄 지역에서는 원주민어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도 주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8) 지금까지 연방 헌법조항에 맞게 헌법을 개정한 주는 총 31개 주 중 15개 주로 이마저도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개정을 한 경우가 많다. 다만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오아하카주나 치아파스주는 실질적인 원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기존의 공무원을 재교육을 시키는 방법 등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멕시코 언어권(權) 법에서 이중 언어 구사자의 공공 서비스직 진출 시 우대조항이 빠진 것이 흠이다⁹⁾.

사법에서의 원주민어 언어권(權)은 원주민어 사용자가 당하기 쉬운 인권침해 사례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로 사법에서 원주민어와 문화를 아는 통역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다양한 원주민어와 문화를 아는 인력의 양성 문제이다.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지식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다. 형사 소송법, 원주민 언어권(權)법에서 통역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 통역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원주민어가 너무 다양하여 실질적으로 통역의 조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멕시코시 인권위원회 보고서 2004). 또한 통역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통역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원주민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주민의 스페인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사법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통역이 없는 경우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를 아는 직원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처리되는 일이 많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몰라 자신의 범죄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형을 살다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석방이 된 경우도 있다(*La Jornada*, 2004/06/28).

교육은 그래도 원주민의 언어권(權)이 가장 잘 보장된 분야이다. 이는 1930년대부터 멕시코에서 원주민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는 33개 언어의 84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간문화적 이중 언어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3-2004년도에 33개 언어로 189종의 무상 교과서가 발행되었다(CDI 2005). 또한 2001년에는 간문화적 이중 언어교육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간문화적 이중 언어교육국을 신설하여 전국의 원주민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9) 뒤에서 살펴볼 과테말라 경우에는 원주민어가 사용되는 지역의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을 채용할 때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교육을 시행하는 데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여기서도 원주민어와 문화 그리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사용 교사의 확보가 어렵다. 또한 교재를 제작하는 데도 앞서 지적한 원주민어의 다양성과 표준어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이 많고, 내용도 지금까지는 스페인어로 된 교재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여기에 담긴 유럽 중심주의적인 이념이 그대로 번역되어, 간문화적 이중 언어교육의 참 뜻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껏해야 초등학교 4-6학년으로 끝나는 짧은 교육기간은 그 효과에 대해 많은 회의를 표명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효과를 평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대중매체에서의 언어권(權)은 원주민이 대중 매체에서 자신의 언어로 된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원주민 언어권(權)법에서는 방송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경제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민영방송에서는 원주민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¹⁰⁾ 설혹 가능하다 해도 원주민어의 다양성 때문에 전국적인 방송은 어렵다. 다만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영 방송에서는 지방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한 문제라 생각된다. 그 예로 현재 오아하카주의 떼완떼백에서 그 지역의 원주민어인 짜뽀떼꼬어(zapoteco)로 제작된 몇 개의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라디오는 전국에서 27개의 원주민어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다. 신문도 각 지역별로 여러 개 발행되며 스페인어와 원주민어가 같이 사용되고 내용도 원주민의 관심사가 주류를 이룬다(Instituto Nacional Indigenista 2000).

원주민어의 진흥과 관련해서는 우선, 원주민어의 표준화와 현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원주민어를 연구하는 인력의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10) 최근 멕시코의 한 민영 방송(TV AZTECA)에서 축구 경기를 요약한 내용을 원주민어로 방송하여 국립 원주민어 연구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 방송 같이 전국을 상대로 하는 곳에서 원주민어로 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원주민어를 하나의 완전한 언어가 아닌 불완전한 언어로 간주하여 언어가 아닌 방언으로 바라보는 일반 주류사회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원주민들 역시 차별이 두려워 자식들이 원주민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원주민어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II.4. 과테말라에서의 언어권(權)

과테말라는 마야(maya), 라디노(ladino)¹¹⁾, 싱까(xinca), 가리후나(garifuna) 그리고 그 밖의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어, 21개의 마야어, 싱까, 가리후나 등 24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다. 각 민족이 차지하는 인구 구성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50%이상이 원주민이고 그 나머지가 라디노라고 간주한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테말라에서도 이러한 다민족, 다언어적인 특징은 철저히 무시되고, 정복자의 언어인 스페인어와 그 문화를 축으로 한 단일언어, 단일문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 행정을 비롯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는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로 기능하고 원주민의 언어는 가정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끈질긴 투쟁과 국제 사회의 원주민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1985년 과테말라 헌법에서 비로소 국가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헌법 66조에서 “과테말라는 마야계 원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생활방식, 관습, 전통, 사회조직 형태, 남녀의 원주민 의상 착용, 언어 그리고 방언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흥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라디노(ladino)란 유럽계 사람들과 원주민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원주민이 아닌 주류 사회의 구성원을 나타낸다.

1995년에 정부와 반군(UNRG) 사이에 체결된 “원주민 정체성과 권리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주민의 언어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원주민어가 그들의 세계관, 지식, 문화적 가치를 습득, 전승하는 도구이므로 과테말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모두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이 같은 맥락에서 원주민 언어를 복원하고, 보호하며 이 언어의 사용과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인정하고 진흥시킬 원주민어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 추진, 원주민어의 교육에서의 사용 추진, 원주민 공동체 수준에서 정부의 대민 업무에 원주민어 사용 추진, 원주민의 권리, 의무, 기회에 관한 사항을 원주민어를 사용하여 고지, 이중 언어구사 법조인 및 사법 통역사 양성 추진, 원주민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 및 원주민어의 대중매체 접근권 보장, 원주민어 공용어화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2003년 5월에 공포된 “국가언어법”에서 구체적으로 입법화된다. 이 법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이 법이 헌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 평화협정, 그리고 과테말라 마야어 한림원 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 언어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들 법과 상충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과테말라 언어법에서는 현재 과테말라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스페인어는 과테말라의 공용어(*idioma oficial*)로, 원주민 언어인 마야, 가리후나, 싱가는 국가어(*idioma nacional*)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간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알바르(Alvar 1986, 303)에 따르면 국가어는 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나타내는 반면, 공용어는 이 언어들 중 특권적 지위를 갖는 한 언어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과테말라의 원주민어는 스페인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마야, 가리후나, 싱가어의 사용지역을 해당 언어 공동체로 한정하고, 이 지역에서 공적, 사적 영역은 물론 교육, 학술, 사회, 경제, 정치 문화활동에서 원주민어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법률, 규정, 조례 등은 각 지역에서 해당

원주민어로 번역되어 공표되도록 하고 있으며, 원주민 언어정책은 과테말라 마야어 한림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스페인어 외에 4개의 원주민어로 번역되어 나왔다.

III.4.1. 언어권(權)의 내용

(1) 차별의 금지

과테말라는 언어 및 인종으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을 형법 202조에 첨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언어법(12조)에서도 마야, 가리후나, 싱까어에 대한 비하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의 형법에 따른 처벌을 명기하고 있다.

(2)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 언어권(權)

국가언어법 13조에서는 국가에게 공공 행정에서 각 지역의 원주민어가 주민들과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를 감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14조에서는 공공 서비스 중 의료, 교육, 사법, 치안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서비스가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로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6조에서는 원주민어가 사용되는 지역의 공무원을 채용할 시 스페인어 외에 해당 지역의 언어능력을 가진 자를 우대하고, 기존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야어 한림원의 협조 하에 언어 및 문화 연수의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에 있어서 언어권(權)은 국가언어법 외에도 형사소송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90조에서는 피의자가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142조에는 소송 행위가 원주민어로도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스페인어로 통역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교육에 있어서 언어권(權)

아무리 원주민의 언어적 권리가 법률로서 보장되어도 원주민어가 사용되지 않으면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원주민어가 유지, 전승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 교육에서의 언어권(權)의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국가언어법 13조에서 모든 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모든 과정 및 수준에서 원주민어를 존중하고, 진흥시키며, 발전시키고,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서 원주민어와 함께 국가의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배울 권리가 원주민의 언어권(權)에 포함되어야 한다(스커드납-캉가스 2002). 따라서 이중 언어교육의 필요성이 생긴다. 이에 대해 헌법 76조에서는 원주민의 수가 우세한 지역에 설립된 학교에서는 이중 언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대중매체에서의 언어권(權)

국가언어법은 17조에서 국가가 마야어, 가리후나어, 싱까어와 그 문화를 국영 매체에서 전파하고 진흥시킬 공간을 마련하고, 민간 매체에서도 원주민어에 대해 비슷한 배려를 하도록 권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언어 진흥

과테말라에서 원주민 언어가 공용어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국가가 이를 진흥시킬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언어법 18조에서는 국가가 각 기관을 통해 시민, 의전, 문화, 체육 행사에서 원주민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19조에서는 각 언어 공동체 언어들의 발전, 진흥,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교육, 문화, 체육부를 통해 마야, 가리후나, 싱까어의 역사, 문학, 전통에 대한 지식을 장려하고, 이러한 유산이 후세에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원주민어 이름 및 지명 사용권리

원주민의 정체성 및 권리에 관한 협정(Ⅲ. 문화권에 관한 조항)과 국가 언어법(11조)에서는 원주민의 성과 이름을 원주민어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지역의 지명도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결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원주민 공동체에 부여하고 있다.

Ⅲ.4.2. 언어권(權) 보장 실태

위에서 본 것처럼 ‘국가언어법’이 공포됨으로서 과테말라에서도 원주민의 언어권(權)이 법률적으로는 존재한다. 그러나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원주민들의 언어권(權)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정치권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비록 원주민의 수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소수민족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에만 관심을 보일뿐 평상시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언어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법령 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멕시코와는 달리 원주민어의 대부분이 마야어군에 속해 방언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지 않고,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더라도 통일된 철자법을 가지고 있으며 과테말라 마야어 한림원을 중심으로 원주민 어휘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정부의 의지와 예산만 확보되면 대부분의 원주민어 사용지역에서 원주민어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원주민어를 구사하는 공무원의 채용, 이중언어 통역사 및 법률가 양성, 이중 언어교육을 위한 교사 확보, 교재 제작, 공문서의 번역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캐나다나, 노르웨이에서와 같이 소수와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권(權)이 완전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

한 풍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일보한 부분도 있다. 차별 금지법을 통한 처벌로 인해 원주민이나 원주민어를 차별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원주민 단체의 설명이다.¹²⁾ 또한 형사 소송법에서 원주민어로 소송행위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통역 제공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하지만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를 구사하는 법률 전문가가 거의 없어 현재 라파엘 란디바르대학을 중심으로 이중 언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비록 통역을 제공하는 법률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사면위의 조사 결과이다(Embajada de Estados Unidos 2003).

교육에서 언어권(權)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다. 현재 간문화적 이중 언어교육은 14개 마야어와 가리후나어 사용 지역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생 7만 명과, 초등학교생 20만 명이 이 형태의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원주민 아동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아는 전문 교사 확보의 어려움, 적절한 교재 부족, 새로운 교수법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원주민 아동의 40%가 아직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Ministerio de Educación 2005).

대중 매체에서의 원주민어 사용은 현재 TV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원주민 언어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특집으로 가끔씩 방영된다. 그러나 라디오의 경우에는 원주민어로 방송하는 방송국이 11개 달한다. 그러나 이 중의 10개는 종교단체(가톨릭: 7, 개신교: 3)에서 운영하며 나머지 한 개는 상업방송이다(Moore 1989).

의료에서도 언어권(權)이 보장되어 있지만 원주민어 전문 인력이 거의 없어 실제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원주민어와

12) 구체적인 예가 2003년에 한 법원이 199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리고베르타 멘추에게 인종 차별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과테말라 공화당(FRG) 당원 5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실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문화를 아는 의료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라틴아메리카는 20세기 마지막 20년 동안에 독립 이후 계속 견지해온 단일언어, 단일문화국가에서 각 국가에서 존재하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민족 다문화국가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했다. 따라서 국가와 원주민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됨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그 동안 무시되었던 원주민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정치적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언어권(權)은 언어적 소수자가 행정, 사법, 교육, 의료 등 공적 영역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경우 독립 이후 계속된 스페인어화 정책에 따라 언어적 권리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이후 원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주민어를 인정하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되고, 원주민의 언어권(權)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혹은 법률 개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 연구에서 다룬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언어 관련법이다. 이는 원주민 권리를 보장하려는 국제적인 노력과 원주민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원주민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정책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그러나 원주민에게 실제적으로 언어권(權)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원주민어가 공적 영역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어의 제정, 철자의 통일 등 표준화와 함께 어휘의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 사법, 교육, 의료와 같은 분야에서 원주민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인력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 관련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중앙 정부

와 지방정부, 정부 부처간 그리고 지방 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주민 및 원주민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지배층의 정치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언어 관련법이 공포가 되었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준비중이어서 아직 그 성과를 말하기에 빠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자칫 언어 관련법이 사문화될 위험성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류 사회가 과거에 원주민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도덕적인 채무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원주민 사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반목과 민족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표준어 및 문자 통일과 같은 언어적 하부구조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Los Estados nacionales de América Latina vivió profundas transformaciones en los últimos decenios del siglo XX, en los cuales muchos países de esta región reconocen y asumen las diferencias étnicas y lingüísticas como factores de enriquecimiento sociocultural y como valiosos recursos para la sociedad en su conjunto. Esto se refleja primero en la reforma constitucional y después en una serie de enmiendas legislativas de menor rango. En este contexto el tema de derechos lingüísticos surge y adquiere fuerza. Los derechos lingüísticos forman parte de los derechos humanos fundamentales, tanto individuales como colectivos, y se basan en los principios universales de la dignidad de los seres humanos y de la igualdad formal de todas las lenguas. Son derechos de los pueblos minoritarios a utilizar sus lenguas en los

ámbitos tanto públicos como privados.

En el año 2003, en México y Guatemala se crearon las legislaciones que regulan de manera expresa y ordenada los derechos y obligaciones de las diversas instituciones, ya sea públicas o privadas, respecto al uso de las lenguas indígenas.

Sin embargo, para el efectivo cumplimiento de los derechos lingüísticos, se requiere algún grado de codificación o estandarización de las lenguas indígenas. De otra forma los preceptos legales quedarían sin efecto por falta de adecuación de los idiomas nativos para ser utilizados en los nuevos dominios que les garantizan las leyes.

Por último, para la expansión de las funciones sociales de las lenguas indígenas, es muy importante que tanto la sociedad dominante como los propios hablantes indígenas cambien las actitudes negativas hacia los idiomas nativos.

Key Words: Derechos lingüísticos, Derechos humanos, Lenguas indígenas, América Latina, Multiculturalismo, Pluralismo cultural, Multilingüismo / 언어권(權), 인권, 원주민어, 라틴아메리카,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원고투고일자: 2005. 09. 07

심사완료일자: 2005. 10. 11

게재확정일자: 2005. 11. 22

참고문헌

- 김성재 외(2002),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출판.
- Acuerdo sobre Identidad y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http://www33.brinkster.com/revistachiapas/No4/ch4guatemala.html>.
- Adelaar, Willem(1991), “The endangered languages problem: South America”, in R. Robins & E. Ulenbeck(eds.) *Endangered languages*, Oxford and New York: Berg, pp. 45-91.
- Alvar, M(1986), *Hombre, etnia, estado: actitudes lingüísticas en Hispanoamérica*, Madrid: Gredos.
- Chen, Albert H. Y.(1998), “The Philosophy of language rights”, *Language Science*, Vol. 20, No. 1, pp. 45-54.
- Congreso de la República(2003), *Ley de idiomas nacionales. Decreto 19-2003*, Guatemala: Academia de Lenguas Mayas de Guatemala.
- Comisión del Derechos Humanos del Distrito Federal(2004), “Consulta sobre discriminación indígena en el Distrito Federal”,
<http://www.cd hdf.org.mx/index.php?id=disc0104>.
- Comisión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los Pueblos Indígenas(2005), “Libros de texto gratuito en lenguas indígenas”,
http://cdi.gob.mx/index.php?id_seccion=470.
- Constitución de Colombia, <http://www.georgetown.edu/pdba/Constitutions/Colombia/colombia.html>.
- Constitución de Guatemala, <http://www.georgetown.edu/pdba/Constitutions/Guate/guate85.html>.
- Constitución de México, <http://info4.juridicas.unam.mx/ijure/fed/9/>.
- Constitución de Perú, <http://www.georgetown.edu/pdba/Constitutions/Peru/per93.html>.
- Dunbar, R.(2001), “Minority language rights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50, pp.

90-120.

- Embajadas de Estados Unidos(2003), *Informe sobre prácticas de derechos humanos en 2002 - Sección Guatemala*, Guatemala.
- Hamel, R. E.(1995), "Linguistic rights for Amerindian peoples in Latin America", in T. Skutnabb-Kangas and R. Philipson(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_____(1997), "Introduction: linguistic human rights in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_____*(2001), "Políticas del lenguaje y educación indígena en México". Orientaciones culturales y estrategias pedagógicas en una época de globalización, en R. Bein y J. Born(eds.), *Políticas lingüísticas. Norma e identidad*, Buenos Aires: Universidad de Buenos Aires, pp. 143-170.
- Gleich, Uta von(1988), *Educación primaria bilingüe intercultural en América Latina*, Eschborn: GTZ.
- Godenzzi Alegre, Carlos Juan(2001), "Política lingüística y educación en el contexto latinoamericano: el caso de Perú", en *el Acta del Congreso de Valladolid*, http://cvc.cervantes.es/obref/congresos/valladolid/ponencias/unidad_diversidad_del_espanol/4_el_espanol_en_contacto/godenzzi_j.htm.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69* <http://www.unesco.org/most/Inlaw5.htm>.
- Instituto Nacional Indigenista(2000), *Estado d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 los pueblos indígenas de México*, primer informe, tomo 1, México.
- La Jornada*, 2004/06/28.
- Ley general de derechos lingüísticos de los pueblos indígenas y reforma a la fracción cuatra del artículo séptimo de la ley general de educación*, México: Instituto Nacional de Lenguas Indígenas.
- Mar-Molinero, Clare(2000), *The politics of language in the Spanish*

- speaking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inisterio de Educación(2005), *Revitalización de la educación bilingüe intercultural*, Guatemala.
- Moore, D(1989), “The sociolinguistics of Guatemalan indigenous languages and the effect on radio broadcasting – part two”, <http://www.swl.net/patepluma/central/guatemala/guatlg2.html>.
- Nahmad Sittón, Salomón(1998), “Derechos lingüísticos de los pueblos indígenas de México”,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No. 132, pp 143-161.
- Paulston, C. B.(1997), “Epilogue: some concluding thoughts on linguistic human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No. 127, pp. 187-197.
- Skudnabb-Kangas, T. y R. Phillipson(eds.)(1995),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_____ (2002), “Marvelous human rights. Rhetoric and realities: language rights in education”,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Vol. 1, No. 3, pp. 179-205.
- Zimmerman, Klaus(1995): “Formas de agresión y defensa en el conflicto de las lenguas española y portuguesa con las lenguas amerindias”, en M. Mörner y M. Rosendhal(eds.), *Pueblos y medios ambientes amenazados en las Américas. Actas I del XLV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Americanistas. Estocolmo*: Instituto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pp. 67-87.